

경찰의 수사권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 상 원**

◇ 목 차 ◇

-
- I. 서 론
 - II. 수사권 현실화에 관련된 경찰과 검찰의 논쟁
 - III. 경찰의 직무와 수사조직
 - IV. 검찰의 직무와 수사조직
 - V. 경찰수사 체계상의 문제점과 수사권 현실화 방안
 - VI. 결 론
- 참고문헌
ABSTRACT
-

I. 서 론

현대의 경찰은 시민을 위해서 법을 집행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봉사를 제공하는 것과 사회통제를 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1)

* 본논문은 2000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 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대구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법학박사.

1) Robert H. Langworthy and Lawrence F. Travis III, Policing in America(N. Y. :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94), p.10.

국립경찰 창설이후 50여년 동안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밤낮없이 근무해 오고 있다.

경찰의 직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면서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인 수사업무는 경찰조직 내외의 환경, 제도 및 법률상의 문제로 인하여 점점 행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범죄수사는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사회의 이익을 보호하는 작용인 동시에 피의자의 인권보호라는 문제와 대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선진국가들에서는 헌법에 적법절차의 원리를 비롯하여 많은 사법억제 규정을 두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도 인권을 보호하면서 실제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행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가장 먼저 국민들과 현장에서 접하고 인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기관이 경찰인데, 경찰이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수사구조의 체계화와 현실화가 보장되어야 함은 말 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한국경찰은 형사사법체계에서 최 일선에 위치하면서 범죄예방 및 진압이라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범죄수사의 경우, 경찰에게 수사를 독립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 있지 못하고, 수사 지휘권이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다.

또, 현실적으로 경찰의 수사조직도 구조적으로 체계화 되어있지 않는 실정이어서 경찰의 수사활동이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권 현실화 문제는 수사단계에서 경찰과 검찰의 권한을 적정하게 배분하고 수사구조를 체계화함으로써 경찰수사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국민의 인권보호와 수사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과 직결된 것이다.

이것은 선진 민주경찰로의 변신을 위해 경찰개혁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경찰조직의 오랜 염원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수사권 현실화 방안이라는 주제하에 수사권 현실화에 관한 경찰과 검찰의 이론적 논쟁과 경찰과 검찰의 직무와 수사 조직에 대해 살펴보고 경찰 수사 체계상의 문제점과 경찰의 수사권 현실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Ⅱ. 수사권 현실화에 관련된 경찰과 검찰의 논쟁

1. 경찰의 수사권 현실화 주장

경찰의 수사권 현실화 주장의 논거로서는 다음과 같다.²⁾

첫째, 수사의 현실과 제도와의 불일치

대부분의 일상생활의 범죄는 경찰에 의해 실제로 처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상으로는 경찰이 개시한 수많은 사건을 소수의 검사가 수사지휘 함으로써 경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닌 보조자의 지위에 불과하여 수사의 현실과 제도와의 불일치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둘째,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

범인의 검거와 증거수집에 대한 임무와 책임을 경찰이 부담하고 경찰간부가 대부분의 수사지휘를 하면서도 법적으로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로서 권한을 가짐으로서 양자의 책임과 권한이 불일치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검사에게 권한이 치우쳐있고 또 검사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이러한 비대한 권한과 과중한 업무를 제한하고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수사권 현실화가 요구된다.³⁾

셋째, 실질적 지휘의 곤란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만 범죄수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소수의 검사로⁴⁾ 연간 150여 만건에 이르는 범죄사건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넷째, 국민불편과 시간 및 경제적 손실 초래

검사가 사법경찰을 지휘하고 이종으로 수사하는 현재의 수사구조로 인해 일반국민들은 불편함과 인권침해를 받을 뿐이다.⁵⁾ 또한 사법경찰이 작성한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검찰조서가 유죄의 증거로 재판에서 활용됨에 따라 피의자·참고인이 검찰의 이종조사를 받

2) 경찰개혁위원회실무팀, 자치경찰제의 이해, 1999, pp.33~38 참조.

3) 1995년 가을, 검사의 1인당 월처리 인원은 379명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검사는 수사, 공소, 재판의 집행으로 이어지는 형사사법 절차상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통제 받음이 없는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수사 종결권,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등의 권한을 행사하지만 또한 그에 상응한 업무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4) 1998년 검사정원법상 검사는 1137명이다.

5) 경찰대학, 경찰학개론(서울 : 경희종합인쇄, 1998), p.280.

게 되어 국민의 불편과 심리적 부담감이 가중되고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다섯째, 수사의 효율성 저해

경찰서장 등 경찰간부의 수사지휘와 검사의 수사지휘가 중복되어 지휘·명령체계가 이원화되어 있고 이로 인해 수사 지연과 업무혼선이 초래되고 있고, 지방 경찰청장, 경찰서장, 각급 수사 간부는 중요사건의 해결과 수사결과에 대한 사실상의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도 법률상 권한이 없어 사건수사에 검사가 개입할 경우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수사지휘에 애로가 있으며 일선수사실무자들은 검사와 소속상사로부터 이중의 수사지휘를 받게되고 검거 및 수사과정에서 법적 재량의 여지는 없으면서 책임만 있게되어 사기의 저하⁶⁾와 수사부서 근무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⁷⁾

여섯째, 정부조직원리에 배치

경찰과 검찰은 정부조직법상 소속이 다른 관청으로서 조직법상 대등 관청간에는 상호권한을 존중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외청인 경찰이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의 포괄적 수사지휘를 받도록 되어있어서 적절치 못하고 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

2. 검찰의 수사권 현실화 반대 논리

검찰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⁸⁾

첫째, 수사와 소추의 불가분성

범죄수사는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범죄 사실을 확인하며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절차를 말하며, 본질상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행위의 성격을 가지며, 소추권자인 검사가 소추권 행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범죄발생 시 즉시 개시되는 경찰수사를 지휘하여 혐의유무를 확인하고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 증거수집 등을 위해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가 필요하다.

둘째, 적법절차의 보장 및 국민의 인권 보장

검사는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장이나 적법절차를 보장해야 하는 준사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과정에 개입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검사는 재판기관인 법원과 병행하는 인권보장의 이중적 통제기관으로서 법원과 다른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사법경찰관리의 범죄수사를 감독하고 수사의 전과정을

6) 장석현, “경찰의 수사권 독립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7호), 1998, p.503.

7) 정균환, 경찰개혁 상, 서울: 좋은 세상, 1998, p.39, 경찰개혁위원회, 전개서, p.36.

8) 서울고등검찰청, 수사지휘론(서울: 대일특수 인쇄사, 1998), pp.19~27참조.

통제할 때 수사절차에서 국민의 인권보호와 형사사법정의의 실현이 가능하다.

셋째, 형사정책적 측면

검사는 소추기관일 뿐만 아니라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국가형벌권행사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검사가 소추권행사의 타당성을 기하고 형사정책적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범죄행위자의 입건여부, 신병결정 등 수사절차의 초동단계에서부터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넷째, 경찰권의 비대화에 대한 견제

경찰은 수많은 인원과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수사권 이외에 정보수집 기능과 무장병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수사권에 대한 견제장치인 검사의 수사지휘권까지 배제될 경우 경찰권의 비대화와 남용의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다.

다섯째, 복잡다양한 범죄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처

현대와 같이 각종 복잡한 법률의 존재, 전문화되고 지능화 된 신종범죄의 증가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법률전문지식과 우수한 자질을 갖춘 검사에 의한 수사지휘는 불가피하다.

여섯째, 다양한 사법경찰조직의 존재

우리 나라에는 일반 사법경찰 외에 35종의 특별사법 경찰조직이 있고 그 인원이나 처리하는 사건이 적지 않다. 이러한 조직들이 통일적인 기준 없이 임의로 수사권을 행사한다면 효율적인 수사권을 행사의 면이나 국민의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사법 절차의 적정운용을 위해서 일반 및 특별사법 경찰관리 조직이 제각기 행사하는 수사권을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게 되고 이를 위해 검사의 수사지휘·감독이 요구된다.

Ⅲ. 경찰의 직무와 수사조직

1. 경찰의 직무

경찰의 목표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범죄와 무질서를 예방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것과 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생명, 재산 및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⁹⁾이고 이러한 목표는 법집행, 질서유지, 봉사업무, 정보수집 등을 통하여 달성된다.¹⁰⁾

9) Samuel Walker, *The Police in America* (New York : McGraw-Hill Book Co., 1983), pp.56~57.

10) Palma D, Mayhall, Thomas Barker, Ronald D. Hunter, *Police Community Relations and*

경찰의 임무에 관하여 영미법계 체제의 국가에서는 대체로 한계가 명백하여 경찰의 임무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대륙법계체제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경찰권을 넓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사고 하에 경찰의 본래기능 외에 위생, 경제, 영업 등에 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경찰의 직무범위를 어느 정도 한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한 국가가 처한 상황이 나 국가의 특수성에 따라 결정될 일인 것이다.

한국경찰의 직무범위는 본연의 직무 외에 남북분단의 현실과 관련된 안보경찰의 역할까지 담당하기 때문에 외국의 경찰보다 넓게 잡혀있는바, 경찰법에는 경찰의 임무를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소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¹¹⁾”를 임무로 정하고 있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는 직무의 범위를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 경호 및 대간첩작전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¹²⁾

2. 경찰의 수사조직

범죄의 수사라 함은 수사기관이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한 준비 절차로서 범죄사실을 탐지, 범인을 검거·조사하고,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활동을 말한다.¹³⁾ 여기서 수사기관이란 법률상 범죄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을 말하는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으로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를 인정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조직은 다음과 같다.

1) 본청과 지방경찰청의 수사조직

(1) 본청의 수사조직

가. 개요

본청의 조직표를 살펴보면 수사의 주무국인 수사국에는 수사과, 형사과, 특수수사과, 조사과, 감식과가 있으며 지능과는 인가 외 운용되고 있다.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Englewood Cliff, NJ : Prentice Hall, 1995), p.76.

11) 경찰법 제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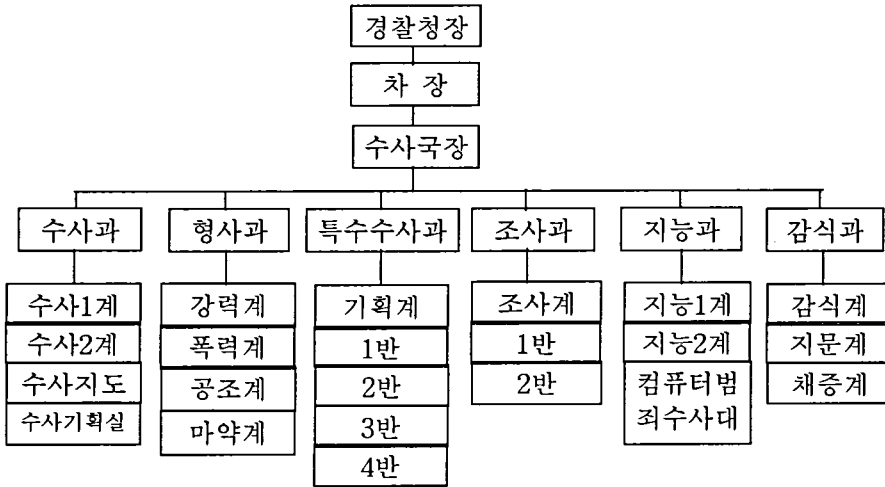
1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13) 중앙경찰학교, 수사(서울 : 정양사, 1997), p.11

나. 사무분장

경찰청 수사국내 각 부서별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¹⁴⁾

<표 1> 본청 수사국 조직



※ 자료 : 경찰청

가) 수사과 업무

(가) 수사 1계업무

수사 예산 및 경비의 관리, 민원 및 이의 사건 조사, 출입국 관리 업무, 기타 국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나) 수사 2계업무

공무원 범죄의 수사지도, 병무사범 및 범칙 군사물자 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통화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특정사건(고위층 사건)의 수사지도 및 보고, 문화재 관리법위반 사범의 수사지도, 도시 개발에 따른 건축물 등 부동산 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공중위생 및 환경사범의 수사지도, 금융 및 경제사범의 수사지도, 무역 및 밀수사범의 수사지도, 지적 소유권 사범의 수사지도, 물가 및 공정거래 관련 사범의 수사지도, 농·수·축산 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직업 안정 및 관광에 관한 범죄의 수사지도, 컴퓨터 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기타 다른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형법범 및 특별법 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14)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경찰청 훈령 제269호, 1999.6.9), 제20조~제24조 참조.

(다) 수사 3계업무

불법 시위 관련 사건의 수사지도, 수배자 수사상황 수집, 수사상황 유지, 선거 관련 사범의 수사지도.

(라) 수사기획업무

수사(형사)경찰 발전방안 연구, 수사경찰 제도 및 운영에 관한 기획 및 지도, 범죄 통계 및 수사 자료의 분석, 수사(형사)관련 국회 대책 업무 총괄.

나) 특수 수사과 업무

국가 및 사회 이익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의 첩보 수집 및 수사, 정부기관 등에서 고발되는 중요사범의 수사, 국민 경제·보건 및 환경 등과 관련된 중요 사건의 수사.

다) 형사과 업무

(가) 강력계 업무

민생치안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분석, 민생치안 관련사항 총괄 및 관계 기관 협조, 살인·강도 및 강간·방화 범죄에 대한 대책과 수사지도, 변사 사건의 수사지도, 초동 수사 및 수사 긴급 배치 훈련 지도, 도범 및 장물범에 대한 대책 및 수사지도, 차량범죄 이용에 대한 대책 및 수사지도.

(나) 폭력계 업무

조직 폭력·일반폭력에 대한 대책 및 수사지도,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사건에 대한 대책 및 수사지도, 공갈·협박 사건에 과난 수사지도, 행불 사건에 관한 대책과 수사지도, 우범자 관찰 보호업무 지도, 음료·음식물 등에 대한 이물질 투입사건 수사지도, 폭발물 사고·열차·항공기·선박사고 및 건물 붕괴 등의 안전사고와 관련된 범죄의 수사지도.

(다) 마약계 업무

마약류 범죄(마약, 대마, 필로폰 사범) 대책 수립 및 수사지도, 유해 화학 물질 범죄 대책 수립 및 수사지도.

(라) 공조업무

기소 중지자 대책 및 지도, 지명 수배 전산 입력 및 해제 자료 관리, 장물·여죄 수사 기법 개발 및 자료 관리, 범죄 수법 자료 수집·분류 관리 및 자료 지원.

라) 조사과 업무

국익에 관련되는 중요 범죄자 자료·첩보의 수집 및 내사, 공직자 비리 관련 첩보.

마) 감식과 업무

(가) 감식계 업무

범죄 감식에 관한 기획 및 지도, 감식 요원에 대한 교육 지도, 감식 기법 및 첨단 장비의 개발, 범죄 현장 자료 수집 및 교육 자료 편집, 지문 자동 분류 검색 시스템 운영.

(나) 지문업무

수사 자료표의 수집 및 관리, 지문 자료(주민등록을 포함한다)의 수집 및 관리, 형사 입건 처분결과의 기록 관리, 변사자 등 신원 확인, 감식, 자료의 축사 운영, 지문 전송기의 운영, 범죄경력조회 및 회보, 폐쇄회로 필름 판독 및 기술지도.

(다) 채증업무

범죄증거물 수집 및 기술개발, 몽타주 작성 및 기술지도, 족흔적·타이어 흔적 등 감정, 지문검색 및 감정자료의 관리, 화재감식, 거짓말 탐지기 운영지도.

사) 지능과업무(지능과는 경찰청 사무 분장 규칙에 없는 인가 외 운용됨)

(가) 지능 1계 업무

첨단 신종 범죄 연구 및 수사지도, 통화 및 유가증권 위변조 사범, 기타 형법범 수사지도, 기타 특별법 위반 사범(보건, 환경 범죄 등).

(나) 지능 2계 업무

선거 사범 수사 기획 및 지도, 각종 보궐 선거 재선거 상황 유지 및 수사지도, 공무원 직무 및 신분 관련 범죄, 고위층 병자 등 특정 형사사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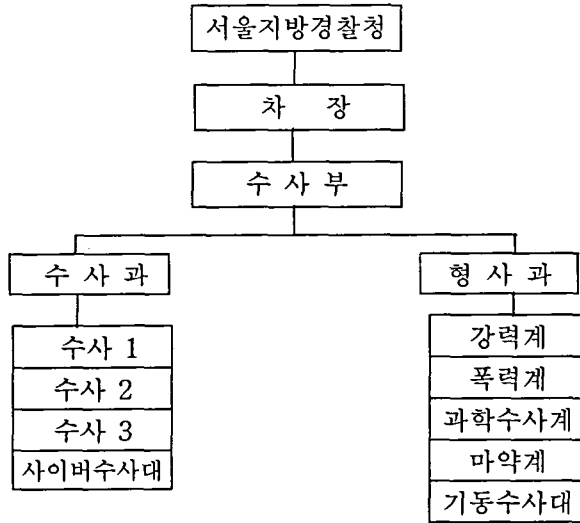
(다) 컴퓨터범죄 수사대

컴퓨터 관련 범죄(해킹 관련, 컴퓨터 통신, 바이러스, 금융 관련 범죄).

(2)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조직

지방경찰청의 수사조직은 지방경찰조직 및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조직되어 있다. 수사과와 형사과가 수사과로 통합된 곳은 대구, 인천, 충남, 전남 지방경찰청이 해당된다. 여기에서는 지면관계상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조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 2>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조직



※ 자료 : 서울 지방경찰청

가.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조직

가) 개요

서울 지방경찰청의 경우는 수사부장 밑에 수사과와 형사과로 구성되며 수사과는 수사1계, 수사2계, 수사3계, 사이버 수사대로, 형사과는 강력계, 폭력계, 도범계, 감식계, 기동수사대로 구성되어 있다.

나) 사무분장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내 각 부서별 사무분장은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훈령 132호, 1999. 9) 제13조에 나타나 있다.

나. 경찰서의 수사조직

전국 경찰서 단위의 수사조직에서 수사과와 형사과가 수사과로 통합된 경찰서가 87개중에서 29개 경찰서가 있으며, 이러한 경찰서는 5대 범죄가 연 2500건, 고소고발이 1만건 및 3년간 수사본부 설치가 10회 미만인 경찰서가 해당된다.¹⁵⁾

지면상 전국의 모든 지방경찰청의 경찰서 수사조직을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서는 서울 지방 경찰청 소속의 경찰서 조직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개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 수사조직으로는 수사과와 형사과가 있는데 경찰서 관할 업무의 특성상 수사과와 형사과가 분리되어 있는 것과 이것이 수사과로 통합된 곳이 있다. 수사과는 수사1계와 수사2계와 조사계로 구성되어 있다. 형사과는 형사관리계와 형사계로 구성된다.

나) 사무분장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수사과와 형사과내 각 부서별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¹⁵⁾

(가) 수사과

a) 수사1계 업무

유치장 관리 및 사건송치, 피의자 호송에 관한 사항, 사건송치철 보관, 사건접수처리부 관리,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 수사경찰교육에 관한 사항, 수사정보비 출납에 관한 사항, 참고인 비용에 관한 사항, 타 수사기관협조에 관한 사항, 호송출장소 지도감독, 지도감독,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b) 수사2계 업무

시위관련 사범의 수사에 관한 사항, 시위관련 사범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경범죄처벌법 적용대상자의 조사, 송치 및 수배, 밀수(특정 외래품 포함) 및 탈세사범수사, 금융 및 경제·환경사범 수사, 통화관련 범죄수사, 유가증권 위·변조사범 수사(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사범 제외), 지능범 및 공무원 범죄수사,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련된 범죄수사.

c) 조사계 업무

형사민원(고소·고발·진정·탄원 등) 접수처리(형사과 소관제외), 수사이의사건수사,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사범 처리.

(나) 형사과

a) 형사관리계 업무

범죄단속 계획 수립 및 기록관리, 벌과금 등 형집행 업무, 미제사건 기록 및 장물품표

15) 경찰청 경찰직제개편안, 19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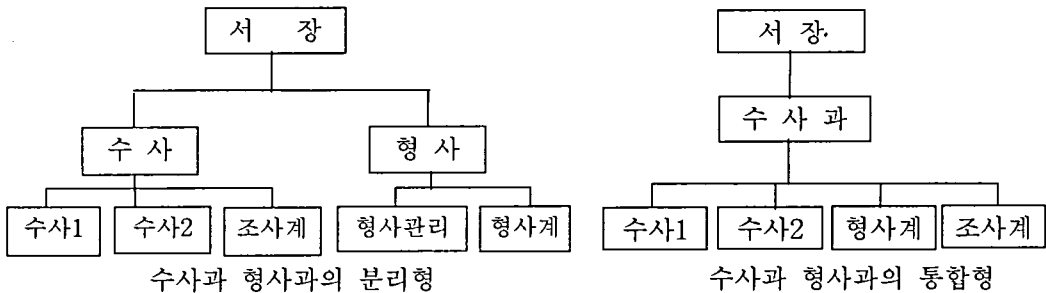
16)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훈령 제132호, 1999.6.29.), 제28조, 제29조 참조.

관리, 수법·수배·공조에 관한 사항, 과 주관에 속하는 타수사기관 협조에 관한 업무, 지문감식 및 수사감식 운영관리, 컴퓨터 터미널 운영, 수사첩보 수집 관리, 우범자 관찰 및 자료관리, 과 취급사건 및 범죄통계 자료관리, 과 취급사건 송치서류 작성, 기타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b) 형사계 업무

강력범죄수사(도주, 실화, 포함), 폭력범죄수사, 도난범죄 및 장물사범 수사, 마약사범 및 도박사범 수사, 기타 형법위반 범죄수사(타 과 주관에 속하는 사항 제외), 기타 특별법 위반 범죄수사(타 과 주관에 속하는 사항 제외), 형사기동대는 형사기동 차량운영, 형사민원 중 강력, 절도, 약취유인, 변사, 일체불상 교통사고 야기 도주 등 현장수사를 요하는 사건과 피민원인이 10인 이상인 민원(고소, 고발, 진정, 탄원 등)사건.

<표 3>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찰서 수사조직



※ 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IV. 검찰의 직무와 수사조직

1. 검찰의 직무와 권한

현행 형법상 범죄수사 절차에서 핵심기관은 검사이다. 검사는 법무부에 소속된 행정 공무원으로서 일반 행정공무원과는 달리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가를 대표하여 개개의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다.¹⁷⁾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검사는 소송법상 수사기관으로서 수사개시의 권한, 임의수사의 권한, 강제수사의 권한 등의 범죄수사의 주체로서의 권한과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 공소권은 수사권, 재판의 집행지휘권과 함께 검사의 핵심적 권한이다.

2)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를 지휘 감독

검사는 범죄 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으며 따라서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현행법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교체임용요구권과 수사중지명령권을 인정하고 있다.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당해사건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권한을 가진다.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상고¹⁸⁾제도가 그 제도적 표현에 해당되며, 거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나 심판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한 검사의 상소제도 여기에 해당된다.

4) 재판집행의 지휘·감독

검사는 재판의 집행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다. 현행법은 자유형의 집행에 있어 신속성·기동성에 대처하기 위해 검사에게 형집행장 발부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2. 검찰의 수사 조직

1) 검찰청 수사조직

검찰청은 검찰의 사무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 단독제 관청인 검사의 검찰사무를 통

17) 이재상, 형사소송법(서울 : 박영사, 1997). p.84.

18)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 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41조.

할 뿐이고 그 자체로는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않는 관서에 불가하다.

검찰청에는 대검찰청·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의 3종이 있으며¹⁹⁾ 이들의 관할구역은 각 법원의 관할구역에 따라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설치한다.²⁰⁾ 지방법원지원이 설치된 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검찰청지청을 들 수 있다.

검찰청의 관할구역은 사건의 송치 또는 타관 송치의 기준으로 된다.

(1) 대검찰청 수사조직

가. 개요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차장검사 및 대검찰청검사로 구성되며,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국내검찰사무를 통할하며, 소관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²¹⁾

대검찰청에는 사무국, 총무부, 중앙수사부, 형사부, 강력부, 공안부, 공판총무부, 검찰부를 두도록 되어 있다. 대검찰청검사는 검찰총장이 명하는 상고사건의 공소유지 및 재항고사건을 처리한다.

나. 사무분장

대검찰청의 각 수사부서별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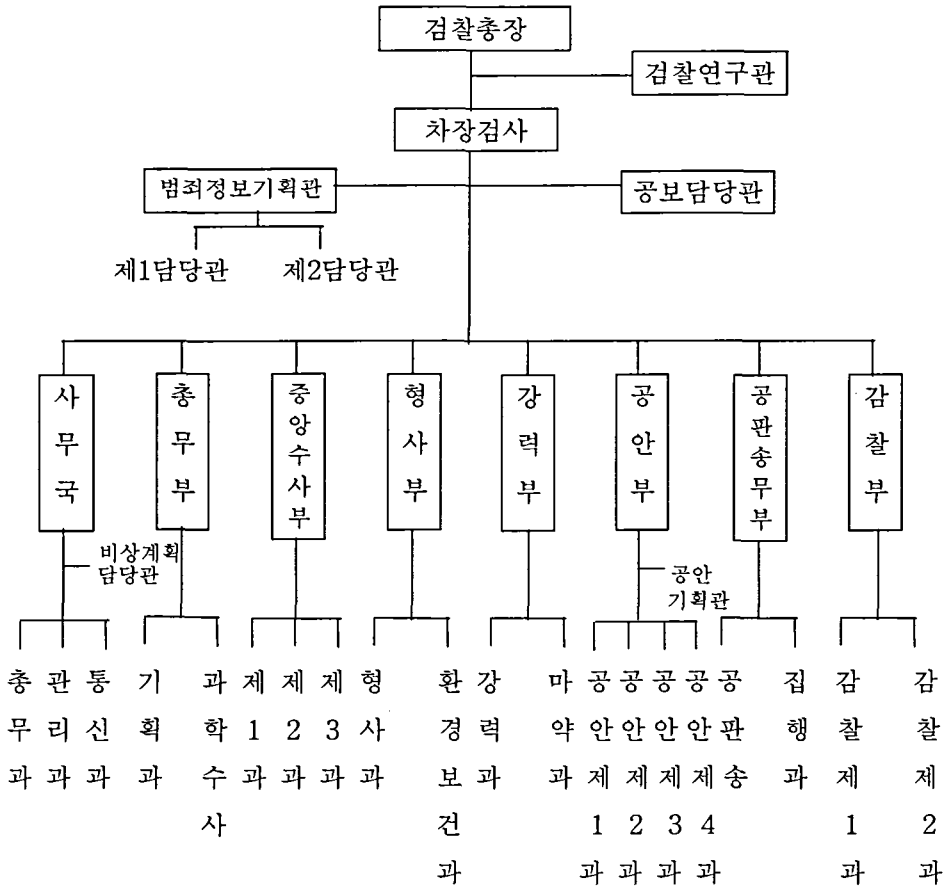
19) 검찰청법 제2조 제2항.

20) 검찰청법 제3조 제1항.

21) 검찰청법 제12조.

22)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6338호, 1999.5.24), 제6조.

<표 4> 대검찰청 조직



※ 자료 : 대검찰청

가) 중앙수사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제1과, 제2과, 제3과를 두고 중앙수사부장 밑에 수사기획관 1인을 두고 있다. 제 1과 사무는 검찰총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의 수사 및 이와 관련된 범죄사건의 수사,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담당하고 제2과 및 제3과는 검찰총장이 명하는 범죄사건 및 이와 관련된 범죄사건의 수사를 맡는다. 또 수사기획관 사무는 검찰총장이 정하는 수사업무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검찰총장이 정하는 수사업무의 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검찰총장이 정하는 수사업무의 유관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기타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이다.

나) 형사부²³⁾

대검찰청 형사부에 형사과 및 환경보건과를 두고 있다.

형사과 사무로는 경제·교통사건 및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및 위의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위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연구·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집 발간에 관한 사항, 위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교양에 관한 사항,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해당된다.

환경보건과 사무로는 환경·보건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과 이에 관련된 검찰 사무보고 사항 등이 있다.

다) 강력부²⁴⁾

대검찰청과 강력부에 강력과와 마약과를 둔다.

강력과는 강력·소년 범죄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위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위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교양에 관한 사항, 위에 규정된 사건에 대한 범죄현상의 분석·연구·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위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내사·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보호처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마약과는 마약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위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위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연구·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위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교양에 관한 사항, 위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내사·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라) 공안부²⁵⁾

대검찰청 공안부에 공안 제1과, 공안 제2과, 공안 제3과를 두고 공안부장 밑에 공안기

23)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7조.

24)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7조의 2.

25)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8조.

획관 1인을 둔다.

공안 제1과 사무로는 대공·사회단체 및 종교 단체 관련 공안사건, 어로한계선 등 월선 조업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위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위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수집·정보에 관한 사항,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위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내사·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해당된다.

공안 제2과 사무는 선거·보도 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위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위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내사·탄원·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있다.

공안 제3과 사무는 학원·외사 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위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위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내사·탄원·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해당된다.

공안기획과 사무는 공안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공안사건의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 공안정세의·판단에 관한 사항, 공안관련 출판물·유인물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및 이에 관련된 사건에 관한 진정·내사·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공안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이 해당된다.

마) 검찰연구관²⁶⁾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총장이 명하는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조사·연구업무에 종사한다.

(2) 고등검찰청 수사조직

가. 개요

고등검찰청은 5개 고등법원에 대응하여 서울고등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이 설치되어 있다. 고등검찰청의 주기능은 항소사건 소송유지, 항고사건처리, 행정소송 집행 및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소송사

26)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0조.

건의 항소심 소송수행 및 지휘·감독이다.

여기에서는 지면관계상 서울고등검찰청조직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나. 서울고등검찰청의 수사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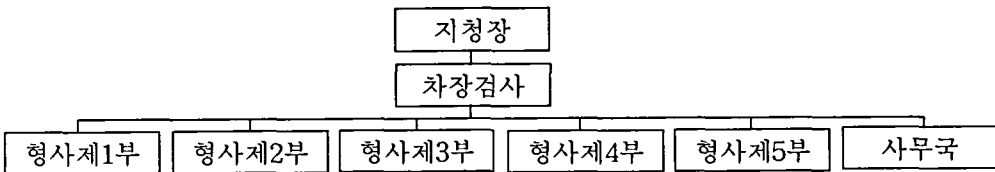
서울고등검찰청에 형사부, 공판부, 송무부를 두고 있다.²⁷⁾

형사부 사무로는 항고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항고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련된 사항, 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소속 공무원의 비위 및 복무기강에 관한 사항, 기타 검사장이 명하는 사항과 다른 부나 사무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있다.

공판부 사무로는 공판에 관한 사항, 형(재산형 제외)의 집행 및 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상소에 관한 사항, 판례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사면·감형 및 복원에 관한 사항,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이 있다.

송무부 사무는 송무사무, 송무통계등에 관한 사무가 해당된다.

<표 5> 서울고등검찰청 수사조직



※ 자료 : 대검찰청

(3) 지방검찰청 수사조직

가. 개요

지방검찰청은 12개 지방법원에 대응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인천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청주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 전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이 설치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지면관계상 서울지방 검찰청의 수사조직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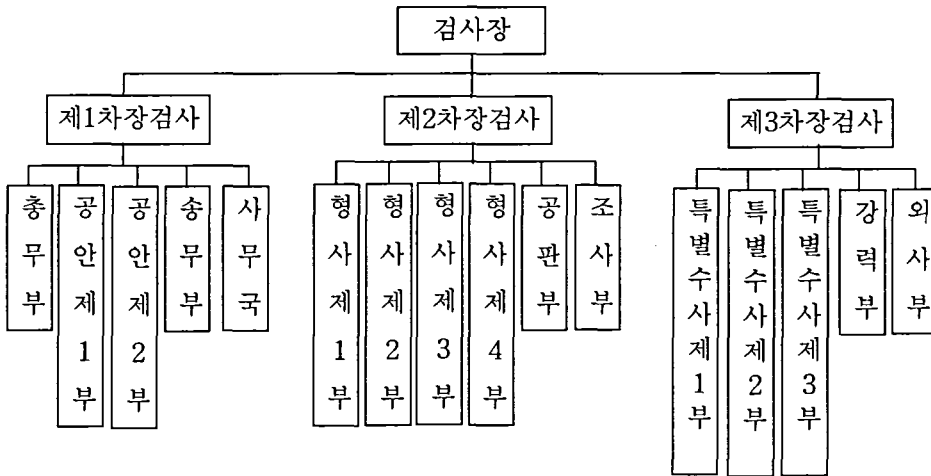
27)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2.

나. 서울지방검찰청 수사조직²⁸⁾

서울지방검찰청에는 3인의 차장검사를 두고 있으며, 제1차장 검사는 총무부, 공안 제1부, 공안 제2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해 검사장을 보좌한다.

제2차장 검사는 형사 제1부, 형사 제2부, 형사 제3부, 형사 제4부, 형사 제5부, 형사 제6부, 소년부, 조사부 및 공판부의 사무에 관해 검사장을 보좌한다. 제3차장 검사는 특별수사 제1부, 특별수사 제2부, 특별수사 제3부, 강력부 및 의사부의 사무에 관해 검사장을 보좌한다.

<표 6> 서울지방검찰청 수사조직



※ 자료 : 서울지방검찰청

(4) 지방검찰청 지청 수사조직

가. 개요

지방경찰청 지청은 40여개 지방법원 지원에 대응하여 설치되어 있다. 각 지방검찰청에 지청장이 있으며 지청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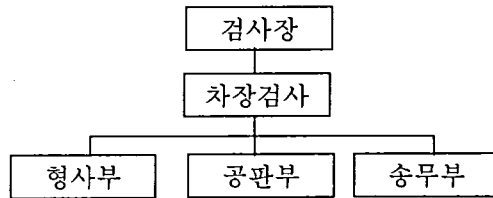
서울지방검찰청의 동부지청·남부지청·북부지청·서부지청·의정부지청 및 부산 지

28)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3조 참조.

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각각 차장검사 1인과 사무국을 두고 인천지방검찰청 부청지청 및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각각 차장검사 1인을 둔다.²⁹⁾

지청의 차장검사는 소속장을 보조하며 소속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표 7> 서울지방검찰청 동부(남부, 북부) 지청의 수사조직



※ 자료 : 서울지방검찰청

나. 서울 지방검찰청 동부(남부, 북부)지청

서울 지방검찰청의 동부지청, 남부지청, 북부지청에 각각 형사 제1부~제5부와 1개의 사무국을 둔다. 이들의 사무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명시되어 있다.

V. 경찰수사 체계상의 문제점과 수사권 현실화 방안

1. 경찰수사 체계상의 문제점

1) 법규상의 문제

수사절차에서 수사의 개시, 진행, 종결 단계의 전반에 걸쳐 검찰과 경찰의 불미스러운 관계가 규정되어 있다.

29)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8 참조.

(1) 헌법

헌법 제12조 제3항에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 영장의 신청은 검사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 사법경찰은 검사가 청구, 법관에 의해 발부된 체포영장이 있어야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2)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는 약 10여개의 조항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명하복 관계를 토대로 형성되어 있다.

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나) 형사소송법 제196조에는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하고,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관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사법 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수사를 행하게 되어 있다.

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의 2에는 검사에게 체포·구속장소 감찰권을 부여하고 있다.

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에 의해 발부 받게 되어있다.

마)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긴급체포시 검사의 사후 승인권을 인정하고 있다.

바)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제1항에는 구속영장 청구의 검사 독점을 인정하고 있다.

사) 형사소송법 제210조에는 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외 수사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 수색, 검증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에 의해 발부받게 되어 있다.

자) 형사소송법 제219조 단서에는 압수물 처분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다.

차) 형사소송법 제312조에는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해 공판에서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하여 조서의 증거능력차이를 규정하고 있다.

카) 형사소송법 제222조에는 “변사체가 발생하면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으며 그 명에 의하여 검시조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검사의 변사체 검시에 대한 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다.

(3) 검찰청법

가) 검찰청법 제4조에는 검사는 범죄수사에 대해 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 할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³⁰⁾

나) 검찰청법 제53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에 있어서 소관 검사가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사법경찰관리의 검사의 직무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 검찰청법 제54조에는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경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중지명령과 사법경찰관리 교체임용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4)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가) 사법 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를 수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1조에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사무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2조에는 “사법경찰관은 소요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을 때와 정당, 사회단체의 동향이 사회질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그 사실과 조치를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정보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30)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 범죄수사,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 재판집행의 지휘·감독
-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라)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13조에는 사법경찰관은 사건마다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이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범죄통계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마)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33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여 변사자 검시시 검사의 지휘를 규정하고 있다.

바)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53조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에 관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자로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장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행정적 책임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2) 조직운영상의 문제

(1) 현황 및 실태

가. 경찰의 사건 처리 현황

1998년 범죄발생 및 검거상황을 보면 총 발생건수가 1,712,233건이고 검거건수가 1,579,728건으로서 검거율은 92.3%이었다.³¹⁾

1998년 총 범죄검거건수인 1,579,728건에서 경찰이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96.3%인 1,521,278건이다. 또 그 중 60.5%에 해당하는 절도, 강도 등 민생침해 범죄는 경찰이 검사의 지휘 없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되고 있다. <표 8>에 나타난 것처럼 1997년 민생침해범죄 880,517건 중 99.8%인 878,610건을 경찰이 처리하였고 검찰에서 처리한 건수는 0.2%인 1,696건에 불과했다. 현실적으로 1,137명의 검사가 연간 150여만 건이나 발생하는 복잡 다양한 범죄를 일일이 지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것은 실정법상 경찰의 수사는 검사의 지휘하에만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경찰에 의해 대부분이 행해지고 있는 규범과 현실의 괴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31) 경찰청, 범죄분석, 1998, p.1.

<표 8> 경찰·검찰의 민생침해 처리현황(1997)

구 분	계	경찰	검찰	특별사법경찰
계	880,517 (100%)	878,610 (99.8%)	1,696 (0.2%)	211 (0.0%)
강도	3,841	3,816	22	3
절도	39,171	38,370	221	80
폭행	5,035	4,974	44	17
상해	22,722	22,508	142	72
폭력행위등	159,666	158,790	843	33
과실사상	3,749	3,684	65	-
교통법	225,919	225,811	108	-
도교법	420,414	420,157	251	6

(단위 : 건)

1997년 총범죄의 60.5%

* 자료 : 경찰청

나. 수사연수소 수사전문교육현황

경찰수사연수소는 경정급 이하 모든 수사요원에 대한 전문교육기관으로서 대학교수, 현직 검사 및 변호사, 타부처 전문 행정공무원, 전·현직 경찰관등을 강사진으로 구성하여 수사 전문지식 습득, 과학적 수사기법 함양, 다양한 실습, 현장견학, 인권보호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수사요원을 양성 하면서 전문성을 꾀하고 있다.

1998년에 컴퓨터 범죄수사, 마약류 범죄수사 등 총9개 과정 수사지휘과정(24주), 조사 전문화(12주), 형사전문화 과정(4주), 형사실무과정(4주), 조사실무과정(4주), 지능사범수사과정(4주), 마약류범죄수사과정(2주), 경대위탁과정(5주)등, 1,584명에 대한 수사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³²⁾

다. 경찰종합학교의 감식교육 현황

범죄현장 감식기법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사·감식장비와 새로운 감식기법

32) 경찰청, 범죄백서, 1999, p.45.

을 도입하는 등 과학수사 기반을 확충함과 동시에 이를 일선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찰관 등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³³⁾

라. 일선수사·조사요원 및 관리·감독 요원 현황

현재 경찰조직내 일선 조사요원 및 관리·감독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부직원들은 행정 및 사법고시출신가가 65명, 경찰대학 출신 1593명을 비롯하여 수사간부연수소 수사지휘과정 수료 후 근무중인 경감이상 880명, 경찰대학 및 간부후보생 출신으로 조사업무과정 수료 후 근무중인 경위이상 717명이 현재 일선에서 활동중이며 또 경찰기관의 수사부서에서 근무중인 수사·형사요원 외에 대학에서 법학과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소정의 시험을 통해 선발한 학사경장 출신의 수사관들이 800여명 일선에서 활동중이다. 따라서 검찰에서 주장하는 경찰관의 자질부족론은 타당하지 못하다.

(2) 수사조직 운영상의 문제점

가. 일반적인 운영상의 문제

현재의 수사부서 기능은 수사실무 상 발생사건과 당직사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의 수사는 수사관들의 당직근무 교대로 인해 수사활동이 단절되고 이로 인해 사건의 해결이 지연되거나 어려움에 처하기 쉽고 또 사건발생 신고시 처음사건을 접수한 담당자가 바뀌어 다른 직원이 그 사건을 재배당 받아 처리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지거나 관심이 줄어들게 될 수 있으며, 그 사건의 담당자가 바뀌므로 인해 신고자나 피해자의 불평의 원인으로 될 수 있다.

특히, 형사활동의 경우, 대부분이 주간근무 위주로 되어 있어서 야간 긴급 수사체계 기능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야간에는 대부분 강력반을 제외한 형사 당직반이 모든 사건을 접수 처리하게 되는데 강력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당직하고 있는 당직반원 2~3명 밖에 출동할 수밖에 없어서 야간에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고, 접수, 초동수사, 보고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형사비상소집을 행하여 이들을 사건현장에 배치하려면 많은 시간이 경과하게 되고 이러한 사이에 수사의 취약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된다.

33) 범죄현장 감식기법 능력 향상을 위해 1998년에 600명의 수사관들에게 수사·감식교육을 실시하였다. 상계서, p.46.

나. 수사본부운영상의 문제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서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사를 행하여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수사본부를 설치하게 되는데, 현재의 수사조직은 수사본부가 상설조직이 아니고 사건이 발생한 연후에 수사본부가 급조되다 보니 수사의 진행상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다.

수사본부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수사본부에서 범인의 체포나 사건해결에만 급급한 나머지 수사의 기록관리를 소홀히 하여 수사를 종료하였을 때 전문성 부족으로 수사기록의 작성 미흡으로 인해 재판 과정에서 증거 불충분이나 법관의 심증을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 대형사건의 경우 수사본부는 여러 경찰서에서 수사요원을 차출하여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수사본부장의 지휘나 명령이 잘 이행되지 않으며, 수사관 각자의 이기심에 의한 정보의 독점이나 무리한 수사실행 등으로 수사의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셋째, 수사본부를 운영함에 있어서 수사본부는 임의로 편성된 조직이다 보니 인원, 장비, 예산 등의 편성이나 조달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수사의 장애를 초래하게 될 수 밖에 없다.

다. 공조수사 체계상의 문제점

공조수사라 함은 경찰관서 상호간에 자료수집·수배·통보·조회·촉탁 등을 함으로써 범인·여죄·특정인의 범죄경력·신원 불상자(변사체 포함)의 신원을 발견하고 범인을 검거·조사·구금하기 위한 종합적인 일련의 조직 수사활동을 말한다.³⁴⁾

광역,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경찰수사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공조수사의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³⁵⁾

첫째, 형사소송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등에 공조수사에 관한 직접적, 강제적인 규정이 없고 경찰청 훈령, 예규인 범죄수사규칙과 범죄수사자료·긴급조회규칙·지명수배규칙 등에 각각 수사과정과 방법만 규정되어 있다보니 편법과 형식적인 공조수사가 수행될 소지가 많으며, 실제 관할권, 지역 연고권 등에 의해 타관서 현지에서 공조수사와 타기관, 타부서에 대한 현지수사는 한계가 있다.

둘째, 전국 발생 검거사건의 현황 및 범죄 분석과 관서간의 연계·조정·지도·지휘

34) 경찰종합학교, 수사교재(서울 : 정양사, 1993), p.115.
35) 이윤근, “공조수사의 정착과 제도보완”, 수사연구, 제153호, 1997.7, p.33.

기능은 비전문적이고 분산되어 있어 공조수사 대상사건의 파악불능과 공조수사 시기의 상실, 지역경찰 및 직무별 수사경찰의 기본업무 수행 등으로 타경찰은 성실한 공조수사가 불가능 하다.

셋째, 수사 요원간, 경찰서간, 지방 경찰청간에 서로 범인을 먼저 검거하겠다는 공명심으로 효율적인 공조수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기동성 있는 광역범죄의 차단체계가 미흡한 문제로 대국민 불평 해소차원에서 검문소 폐쇄로 이동범죄의 신속한 대응이 불가하고 교통량 폭주로 검문·검색이 곤란하고 범죄이용차량의 자동식별장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라. 수사장비 및 수사기법상의 문제점

현대사회는 다원화·전문화·정보화 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 역시 지능화·조직화·기동화·광역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범죄경향은 범죄자들이 현장에 증거를 남기지 않고 있고, 피고인 대부분이 법정에서 범죄 사실을 부인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학수사 특히 현장감식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경찰서의 경우 형사계에 경장 또는 경사 계급의 감식요원을 1명 정도 두고 있는 실정으로, 타수사 요원에 비해 상대적 지위의 열세는 말할 것 도 없고 감식능력의 부족과 수사장비의 열세로 과학수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수사를 위한 수사장비 또는 기동장비, 통신장비, 감시장비, 채증장비, 감식장비 등이 있지만 우리 나라 경찰수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사장비는 기초적인 것이 대부분이고 그 숫자도 미약한 실정이다.

현대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과학의 확실성과 유용성을 수사에 적용하는 과학수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과학수사는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일 뿐만 아니라 수사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보장과 법관의 합리적 심증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³⁶⁾

마. 수사경찰 근무환경상의 문제점

범죄수사에 대한 국민의 욕구는 상승하고 있는데 반해, 수사경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내부적인 근무여건은 악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틈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 위기 상황에까지 초래하고 있다.³⁷⁾ 경찰 수사부서는 범죄의 다발에 따라 시간외 근무로 연이

36) 이상원, “과학수사의 요청과 활동”, 수사 연구 제154호, 1997.8, p.37.

37) 김보환, “범죄수사에 있어서 경찰과 국민의 협력강화방안”, 연구보고서 95-10, 치안연구소,

어 이어지고 있으며, 공휴일이나 연휴 때에도 근무에 임해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사요원들은 가정생활은 물론 승진시험을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고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자기 발전을 위한 교육기회 현상까지 보이고 있으며, 몇 년 전부터는 수사부서의 근무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 수사권 현실화 방안

1) 불평등 법규정의 시정

현실적으로 발생범죄의 절대 다수의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은 불평등한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불평등한 법규를 삭제 또는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함으로써 경찰과 검찰이 대등한 관계에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수사 서비스를 제공케 하여야 할 것이다.

(1) 헌법 조문(제12조 제3항)의 삭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개헌에 의해 삭제되어야 한다.

헌법은 국가최고 기관의 조직과 작용,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에 관한 기본원칙, 국가권력 상호간의 권한 배분 관계를 정한 한 국가의 기본법을 의미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특이하게도 국가 최고기관의 조직과 전혀 관계가 없는 법률기관인 검사가 하는 형사소송의 절차에 관한 일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세계의 주요국가 중에서 헌법에서 영장신청을 거론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이것은 1952년에 실시된 5차 개헌 때 검찰에게 준 특혜이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할 문제중의 하나이다.

(2) 형사소송법 속의 불평등 조항 개정

형사소송법 속에 경찰에서 불평등 관계의 법규로 지목되고 있는 법규들을 개정 또는 삭제하여 경찰과 검찰이 대등한 관계에서 일함으로써 수사정의 실현할 수 있도록 해

야할 것이다.

①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의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를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여 수사권을 경찰과 검찰이 공유함이 타당하다.

②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에서는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해 검찰은 수사기관이고 경찰은 검찰수사를 보조하는 수사보조기관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수사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의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조서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될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의 규정에서 “검사”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로 고쳐야 할 것이다.

④ 형사소송법 제198조의 2(검사의 체포·구속 장소 감찰)의 조항에 의해 검사는 매 월 1회 이상 피의자 구속장소를 감찰하여 피구속자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 역시 삭제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근 몇 년 동안 경찰이 피의자의 인권을 유린하였다고 보도된 적이 없을 정도로 경찰에게는 예민한 문제이다. 미국 같은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경찰서 유치장은 검사가 의무적으로 감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구속장소 내에 관련된 피의자의 불만이 있으면 검찰이 경찰에 통보하여 주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⑤ 형사소송법 제210조 (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 수사)의 조항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외에서 수사를 하거나 관할구역 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아 수사할 때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긴급을 요할 때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 역시 검사에게 보고와 지휘를 받고 수사업무에 임해야 한다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당연히 삭제가 되어야 할 조항이다.

⑥ 형사소송법 제222조(검사의 변사체 검시에 대한 지휘)이 조항에 의해 변사체가 발

생하면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으며 그 명에 의해 검시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항 역시 수사의 단서에 해당하는 영역까지 검사의 개입을 규정한 것이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3) 검찰청법의 일부삭제

검찰청법 제54조(교체임용의 요구)의 조항에 의해, 검사는 사법경찰관을 교체할 수 있는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절대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으므로 정부조직의 대등한 기관사이에서 검사는 타 기관소속 수사과의 인사권마저 쥐고 있는 것 역시 잘못된 법규정이므로 삭제됨이 타당하다.

(4) 사법 경찰관리 직무규칙의 일부삭제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11조와 제12조(수사사무보고와 정보보고)의 조항에 의해 사법경찰관은 중요범죄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당·사회단체의 동향이 사회질서에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과 경찰조치를 관할 검사장 및 지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경찰이 수사예규는 물론 검찰 상부기관인 법무부가 정한 법무부령인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에 의해 경찰을 통제, 보고토록 하는 불평등한 조항으로서 수사와는 관련이 없는 정보보고로서 삭제되어야 한다.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일부삭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행정적 책임요구)의 조항에 의해, 관할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 그 임명권자에게 당해 사법경찰관리의 징계, 해임 또는 체임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검찰이 경찰의 행정처분에까지 간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므로 삭제해야 한다.

(6) 기타 불평등 조항의 삭제 필요

기타 삭제되어야 할 불평등 조항들의 예로서, 검찰청법 제53조의 사법경찰관리의 복

중의무, 형사소송법 제200조 2의 체포영장의 검사에게 신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의 긴급체포시 검사의 사후승인, 형사소송법 제219조 단서의 압수물 처분에 대한 검사의 지휘, 검찰청법 제4조의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 감독, 검찰청법 제53조의 검사가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의무, 사법경찰 관리 집무규칙 제2조의 사법경찰관리의 검사지휘에 의한 수사,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3조의 범죄통계 보고의무,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53조의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시 검사의 지휘,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54조의 사건송치의무, 형사소송법 제222조의 검사의 변사체 검시에 대한 지휘 등을 들 수 있다.

2)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중앙수사부서설치와 운용

현재의 한국 경찰조직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경찰 일원체제로 되어 있으며, 그 성질상 다의적이고, 양적으로 방대한 경찰임무를 지역적으로 경찰청, 지방 경찰청, 경찰서와 같은 단계로 분담하고, 관서마다 계, 과, 부, 국 등 직위를 분류하여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실시된다면 국가경찰과 지방경찰간 수사업무를 분리하여 양자간 업무를 지휘, 조정, 통제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중앙경찰의 수사업무는 자치경찰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중앙경찰과 지방경찰이 수사업무를 분담처리 하게 함으로써 양자가 자기들의 임무로 정해진 업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면서 상호 협력, 조정하자는 것이다.

중앙단위의 수사부서는 경찰청장 직속기구로 존치 시키는 것이 타 소속 하에 존치 시키는 것보다 수사업무의 능률성 면에서, 경찰지휘체제의 약화 방지 면에서, 경찰청내의 타부처와 협조 관계 면에서 갈등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부서는 반 독립기구로 운영되며, 경찰청의 다른 국과는 별도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고 수사결과에 대해서도 경찰청장에게만 보고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중앙수사부서 제도는 기존의 경찰청 수사국 업무중, 국가 및 사회적 이익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의 첩보 및 정보수집 중요 하명사건의 내사 및 기존의 형사과 업무, 첨단 신종범죄와 선거 사범 수사 및 공무원 관련범죄, 고위층 빙자 등 특정 형사사건에 관련된 업무를 행하는 지능과 등의 업무들과 외사관리관실 업무중에서 국제적 사건, 국제공조수사와 관련된 외사3담당관의 업무³⁸⁾가 상당수 중앙수사부서의 업무로 이관되어

38) 외사3담당관의 업무는 국제형사1업무(국내외국인 범죄수사 및 지도)와 국제형사2업무(외국 및

야 하고, 수사국 기능은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수사공조 및 협조문제로서 국가 및 지방경찰의 공조수사에 있어서 특별시, 광역시, 도의 관할 구역 내에서 2개 경찰서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발생한 사건은 중앙수사부서의 시도지부에서 수사를 행한다.

2개 이상의 도와도,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중앙수사국에서 직접 수사를 행하며, 또 대형 사고나 수단의 흉악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범죄라고 인정되는 사건이나, 중앙수사부서장의 판단에 의해 직접 중앙수사부서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에 관계없이 중앙에서 직접수사를 행할 수 있게 한다.

경찰기관간 협조로서, 지방경찰청은 중앙수사부서의 시, 도지부와 경찰서는 중앙수사부서 지부 분소와 협조하여 수사업무를 처리토록 한다.

검찰로의 사건송치에 있어서, 중앙수사부서의 지부분소에서 수사한 사건은 지부분소장의 명의로 지방검찰청 각 지청으로 송치하고, 중앙수사부서 시·도지부에서 처리한 사건은 중앙수사부서 시·도 지부장 명의로 각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며, 중앙수사부서에서 수사한 사건은 대검찰청 또는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이다.

3) 수사업무의 전문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

(1)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분리 운용

지역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사경찰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의 수사권 현실화는 오로지 검찰로부터 만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조직 내부로부터의 정치적 영향 내지는 통제로부터 독립하는 의미도 포함될 것이다.

경찰조직은 계급사회이고 상명하복의 명령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부로부터의 수사에 관련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영향력을 차단하고 진정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내지 지역주민의 신뢰받는 경찰, 수사권 현실화에 부응하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경찰조직 내부에도 전문성이 확보되고 경찰조직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영국의 수사경찰의 운용처럼 사법경찰과

외국인 관련 중요범죄수사)로 구성된다.

행정경찰을 분리, 운용하여 선발이나 보직 인사 등에서 일반경찰과 상호교류가 되지 않도록 일반경찰과 분리시켜 운용·관리함으로써 사법경찰관리들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해야한다.

(2) 수사전문인력의 확보와 관리

전문인력의 수급과 적정관리를 위해 합리적인 수사경찰관 수급 계획이 수립 실시 되어야 하고 이들의 선발에서도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자원들을 수사전문인력으로 특별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외에 지금의 학사경찰 특채제도처럼 유능한 젊은이들을 지속적으로 선발하는 정책이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의 수사기능이 전문화되기 위해서는 현대의 신종·전문범죄 수사기능의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세무·회계, 정보처리기사, 환경분야 등의 자격증 소지자들을 전문수사관으로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사요원에 대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직무와 연계되어서 각 과정별 단계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3) 수사환경 개선

IMF이후 최근 범죄의 빈발과 수사환경의 변화로 수사경찰의 업무량은 증가했으나 수사경찰력의 증원은 이에 부응하여 못하기 때문에 수사경찰의 근무시간이 과중한 실정이고 수사경찰의 운용이 주간 근무위주로 편성되어 있으나 실제 강력범죄의 발생은 심야에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고 있다.³⁹⁾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사경찰력의 현실적 증가에 의해 3부제 근무실시가 필요하고 형사 24시간 범죄 대응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전문수사관 자격증제도를 실시하여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수사관에 대해 전문수사관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에 상응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수사경찰관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외에 수사비가 현실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형사외근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교통비, 식비, 협조사 접대비 등 수사요원 활동비가 물가수준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수사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

39) 강력범죄 야간 발생률(20 : 00 ~ 04 : 00)을 44.1%, 경찰청 자료.

따라서 수사 환경 변화에 따를 수사요원의 활동비를 현실화 시켜 줌으로서 안정적인 환경 하에서 수사활동의 할 수 있도록 수사요원들의 사기를 향상시켜야 한다.

(4) 인권보호를 위한 고문변호사 제도 활용

경찰수사권 현실화의 일환으로 민생침해 범죄 수사를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수사절차에서 올바른 법조항 적용, 증거능력 있는 증거의 확보, 피의자 신문조서 및 서류 작성, 구속의 적정성 검토, 인권에 관련된 문제 등에서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게 되고 경찰수사관들이 전문지식을 갖추는 것이 요청되는 바, 이를 보완하여 경찰 조직내부에서 이러한 분야를 조언하고 자문해 줄 고문 변호사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의 수사권 현실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공소담당 기관인 검찰과의 유기적 협조가 요청되고 수사진행에 대한 법적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외국 선진국 경찰에서 대도시마다 고문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다.

4) 지속적인 경찰개혁의 필요

경찰의 수사권 현실화 요구에 검찰의 일관된 대응논리 중의 하나가 “사법경찰은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금품을 받고 피의자를 봐주며, 고문 등으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지휘가 필요하다.”⁴⁰⁾는 식이었다. 경찰조직에서 다시는 이러한 판에 박힌 식의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또 진정한 지방화시대의 지역주민에 가까이 있고 신뢰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수사권 현실화 요구이전에 경찰조직 자체에서 지속적인 경찰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조직내부의 자정노력과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VI. 결 론

한국경찰의 수사권 현실화 문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 자치제경찰의 도입과 함께 건국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기된 것이었고 정권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였다.

40) 경찰개혁위원회 실무연구팀, 자치경찰제의 이해, pp.38~39 참조.

최근 자치경찰제의 실시가 내년으로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경찰의 수사권 현실화 문제는 경찰과 검찰사이에서 첨예한 대립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은 국가 형벌권 행사의 형사정책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기관들은 국가형벌권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에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다.

경찰의 경우 수사업무에서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시킬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 못하고 범죄수사의 지휘권이 검사에 부여되어 있으며 수사구조 역시 체계화되지 못한 현실에 처해 있다.

새 천년의 시대에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관련 논쟁을 종식시키고 수사구조 역시 새롭게 체계화 시켜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어느 기관이 수사권을 유지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권의 적절한 배분과 구조의 체계화를 통하여 주권자인 국민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와 범규정의 문제, 제도적인 문제의 개선을 통해서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위해 국가 형벌권을 행사한다는 국가적 차원의 논리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21세기의 경찰은 선진 민주국가의 경찰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이고, 개인의 자유와 이익보호를 위한 진정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이 되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국내문헌

- 경찰대학, 경찰학개론, 서울 : 경희종합인쇄, 1998.
- 경찰개혁위원회실무연구팀, 자치경찰제의 이해.
- 경찰종합학교, 수사교재, 서울 : 정양사, 1993.
- 경찰청, 범죄분석, 1998.
- 경찰청, 범죄백서, 1999.
- 김보환, “범죄수사에 있어서 국민의 협력 강화방안, 연구보고서 P5-10 치안연구소, 1995.
- 서울고등검찰청, 수사지휘론, 서울 : 대일특수인쇄, 1998.
- 이상원, “과학수사의 요청과 활동”, 수사연구 제154호, 1997.
- 이윤근, “공조수사의 정착과 제도보완”, 수사연구 제135호, 1997.
- 이재상, 형사소송법, 서울 : 박영사, 1997.
- 정균환, 경찰개혁(상), 서울 : 좋은세상, 1998.
- 장석현, “경찰의 수사권 독립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7호, 한국공안행정학회, 1998.
- 중앙경찰학교, 수사, 서울 : 정양사, 1997.
- 검찰청법.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 경찰법.
-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외국문헌

- Langworthy Robert H. and Lawrence F. Travis III, Policing in America, N. Y. :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94.
- MayHall Palma D., Thomas Barker, Ronald D. Hunter, Police Community Relations and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Englewood Cliffs, NJ : Preantice Hall, 1995.
- Walker Samuel, The Police in America, N.Y. : McGraw-Hill Book Co., 1983.

ABSTRACT

A Study on the Independence of Investigation Authority in Korean Police

By Lee, Sang Won

An independence of investigation authority of police is a long desire of Korean police.

This study examines a theoretical dispute of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their duties and investigation organization with the subject of an independence of investigation authority in Korean police.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problem of investigation system of police and devices of an independence of the police investigation authority.